##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448 발의연월일: 2025. 1. 10.

발 의 자:한정애·주철현·조인철

문진석 • 박홍근 • 양문석

강준현 • 민홍철 • 한창민

김영배 · 허종식 · 임광현

송옥주 의원(13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 제79조는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이 중 일반 사면은 국회 동의 를 거쳐야 하지만, 「사면법」에 명시된 특별사면은 대통령 권한임.

이로 인해 「형법」상 내란죄·외환죄와 같이 국가의 존립과 헌정 질서를 위협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대통령의 독단적 인 판단에 의한 사면이 가능한 상황임.

그러나 최근 반헌법적 비상계엄 선포를 선포해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내란죄 등의 중대 범죄를 저지른 내란수괴 피의자 윤석열과 같은 경우에는 사면 등으로 면죄부를 주지 못하도록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한편, 헌법 제84조에 따르면 현직 대통령의 직무수행이 형사 절차로

방해받지 않도록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하도록 하는 불소추특권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는 내란죄와 외환죄를 범한 경우에는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헌법 질서를 수호해야 하는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법치주의의 원칙을 반영한 것임.

이에 내란과 외환의 죄를 범한 자는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사면 등의 제한) 제8조 및 제9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사면·감형 및 복권을 할 수 없다.

- 1. 「형법」 제2편제1장의 죄를 범한 자
- 2. 「형법」 제2편제2장의 죄를 범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lt;신 설&gt;</u>	제9조의2(사면 등의 제한) 제8조
	및 제9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
	는 사면·감형 및 복권을 <u>할</u>
	<u>수 없다.</u>
	1. 「형법」 제2편제1장의 죄를
	<u>범한 자</u>
	2. 「형법」 제2편제2장의 죄를
	<u>범한 자</u>